

직원 인권보

직원과 수급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합
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상호존중 수칙

- *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비하
요양사 등)을 사용해 주세요.
- *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에
도움을 주고받는 태도를 지켜주세요.
- * 서비스 제공 중에는 급여 외 제공 행위를 요구
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
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.

2. 폭언 · 폭행 금지 및 예방 수칙

- * 욕설, 위협적 언행, 고함 등은 상대방에게 큰
중단될 수 있으며 민·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
- * 신체적 접촉, 밀치기, 때리기 등 모든 형태의

보호 안내문

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

표현을 삼가고, 존칭과 적절한 호칭(요양보호사,
에 참여하는 관계예요.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

구하거나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. 특히, 부재 시
하거나, 동거 가족의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

상처를 줄 수 있으며, 발생 시 서비스 제공이
수 있어요.

신체적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, 발생 시

즉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·형사

3.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수칙

- *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항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처벌 조치
 - * (시각적 성희롱) 외모나 신체를 음란한 시선의 행동이에요.
 - * (언어적 성희롱) 성적 농담, 음담패설, 특정 신
 - ※ “야”, “애인”, “이쁜이” 등과 같은 인권침해
 - * (신체적 성희롱) 불필요한 신체 접촉, 포옹, 손
 - * (기타)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술자리를 요구하
- 해당돼요.

금천주간모

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
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며, 발생 시 직원은
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.

으로 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는

신체 언급, 불쾌한 호칭 사용 등이 포함돼요.

해적 호칭도 포함돼요.

손잡기, 뒤에서 껴안기 등의 행동이에요.

거나 과도한 사적 연락을 요구하는 행동 등도

보호센터

